

大韓醫療氣功學會 會則 全文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대한한의학회 분과학회로서 “의료기공분과회”라 칭하며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를 각 시, 도에 둘 수 있다.

제 2 조 (목적 및 사업) 본회는 한의학의 발전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의료기공을 통한 한의학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공기술의 수신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공의 교류 및 수련에 관한 사항
4. 학술지 발간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5. 외국의 의료기공학회와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한의학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받은 자로 하며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명예회원 : 의료기공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정 회원 : 대한한의학회 회원으로서 의료기공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3. 준 회원 : 대한한의학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공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제 4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본회 회원은 회칙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회비 및 년회비와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원 선출에 있어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 5 조 (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명
2. 자문위원 : 약간명
3. 명예회장 : 약간명
4. 회 장 : 1 명
5. 수석부회장 : 1 명
6. 부 회 장 : 3 명
7. 이 사 : 15 명 내외
8. 감 사 : 2 명

제 6 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학술 기획 총무 편집 홍보 교육 전산 보험 국제 연수 무임소 등의 일들을 배정하여 이사회를 구성한다.
4. 감사는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5. 간사는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록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고 기록, 유지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3.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임원 선거)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제 9 조 (임원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 보궐선거는 이사회에서 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4 장 회 의

제 10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한다.

제 11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 총회로 하며 정회원에 한하여 의결권이 있으며 참석 인원으로 성립된다.

제 12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4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회원 3분의 10이상 또는 이사회회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 회장은 총회를 주재한다.
5. 총회 소집 공고는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총회 의결 및 보고)

1. 총회는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거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총회 의결 사항)

1.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회비, 년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7. 기타 사항

제 15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매 2개월마다 개최한다. 다만 회장 또는 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재석의원 3분의 2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연도

제 16 조 (제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총당한다.

1. 임회비 10만원
2. 년회비 매년 학회에서 정하는 바로한다.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 17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 18 조 (보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1)

1. 본 회칙은 대한 한의학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3. 본 회칙은 1998년 5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회칙 개정사항

1. 제 2장 5조 4항 부회장 1인을 부회장 3인으로 개정함.
2. 제 2장 5조 5항 운영위원 8명 내외를 10명 내외로 제정함
3. 제 4장 12조 2항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월중 회장이 소집 한디를 4월로 개정함
4. 제 5장 16조 1항 임회비로만 명시되었던 것을 임회비 2만원으로 개정
5. 제 5장 16조 2항 년 회비 및 부담금이라 명시되었던 것을 년 회비 3만원 및 부담금으로 개정

학회지 논문 투고 요령

- 1) 투고원고는 인쇄본 1부 한글 3.0 이상의 파일이 담긴 디스켓 1장으로 한다.
- 2) 모든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로 하고 글자체는 세명조, 없을 경우에는 신명조로 하되 Style 및 모든 글자형태(위첨자, 아래첨자, 진하게, 밑줄, 이탤릭체 등)을 일체 설정하지 않는다. (이름, 제목, 본문 모두 포함)
- 3) 글자체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위첨자, 아래첨자, 진하게 밑줄, 이탤릭체 등) 인쇄본 원고에 붉은색으로 밑줄표시를 하여야 하며 File에서는 일반문자 형태로 둔다. (각주 번호의 경우도 표시할 것)
- 4) 논문제목, 발표자명, 영문제목, 발표자 영문표기, 영문초록, 본문 등의 순서는 기존의 학회지 발표 논문을 참고하여 엄수하여야 한다.
- 5) 게재자의 소속을 국문의 경우는 *를 사용하여 각주의 양식을 따라 하단에 표기되도록 한다.
- 6) 모든 영문 표기는 표준 영문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7) 중간점(·)은 ^F10을 하여 전각기호 일반에 나오는 것으로 한다.
- 8) 모든 논문은 한글 및 영문 key word를 첨부한다. 용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예 key word : 기공, 정경, 기경, Gigong, Regular meridian, Extra meridian 등)
- 9) Numbering에 있어서 다음 순서를 따른다. (I II - 1.2. - 1)2) - (1)(2) - ①② - 가나)
- 10) 모든 문단은 들여 쓰기 등의 조정을 일체 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잘못은 문단앞에 스페이스를 넣어 처리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편집시 일일이 교정을 보아야 하므로 아주 힘들다.)
- 11) Table은 가능한 도표 기능을 이용해 작성한다.
- 12) Fig. 등 그래픽으로 작성된 것이 삽일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파일과 같이 그래픽 파일도 제출한다.
- 13) 모든 내용에 있어서 주석은 각주로 하도록 한다.(미주 허용 안함)
- 14) 각주는 저자 : 서적명, 지역, 출판사며, 발행년도, 쪽수의 순으로 기록한다.
- 15) 논문의 페이지 수는 상기방식을 적용하여 20~30 페이지 내외가 일반적이다.

ISSN 1229 - 6198

第 5 卷

Vol.5 2001

大韓醫療氣功學會誌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GI-GONG ACADEMY

2001. 11. 24. 印刷

2001. 11. 25. 發行

發行人 김 기 옥

編輯委員 윤 중 화

이 기 남

박 재 수

김 경 환

조 흥 윤

學術理事 이 재 흥

發行處 大韓醫療氣功學會

인쇄 : 금동사 (02)2275-9875

본부 : 금천구 독산본동 988-8

TEL : (02)854-7575
